

# 인간복제와 법

배 병 일\*

## 1. 서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이 사회구조나 일상생활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요구나 규제의 움직임이 있다. 최근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변화를 연구하는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검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욱이 인간복제를 둘러싸고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쾌속도로 진전되어 왔고, 특히 생물학의 발달에 의하여 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들을 통한 생명공학의 발달은 20세기에 들어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다. 이런 축적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1930년대부터 시작된 개구리 등 동물에 대한 수정란복제방식에 의한 생명공학 기술은 급기야 1996년 7월 영국의 돌리를 체세포복제방식에 의하여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종래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결합을 통하여 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난자와 정자를 의학적 시술과 조작을 통한 인공생식에 의하여 인간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공생식의 첫 단계는 의사가 정자를 여성의 생식기관내에 기구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AI)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체외에서(시험관에서) 정자와 결합 수정시켜 생성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내에 이식시키는 체외수정(In-vitro-Fertilization & Embryotransfer=IVT&ET)이

---

\*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다. 사람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로 끄집어내어 이를 관찰하고 검사하는 기술의 발달은 신의 섭리라고 하는 인간의 탄생에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만용의 길로 빠져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간계놈계획이 발전됨에 따라 인간의 유전자 구조가 해명됨으로써 생식세포의 유전자조작을 통한 유전병의 극복과 함께 인간의 탄생을 기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공수정방식, 수정란복제방식을 뛰어 넘어 마지막 단계인 체세포복제방식에 의한 기술은 인간복제를 시도하기에 이르렀고, 2002년 12월 27일 종교단체 라엘리언 무브먼트(Raelian Movement) 산하 인간복제 회사 클로네이드는 31살의 미국여성이 사상 최초로 외국에서 복제아기 '이브'를 낳았으며 이 아기가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발표를 브리지트 부아셀리에 클로네이드 사장을 통해서 함으로써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 한편 클로네이드와 인간 복제를 놓고 경쟁해온 이탈리아의 세베리노 안티노리 박사는 이탈리아 ANSA 통신과의 회견에서 부아셀리에 박사의 발표 내용은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아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 최초 복제 인간의 탄생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인간복제기술은 너무 첨단 과학적이고 아직까지 전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탓에 인간복제기술의 정확한 방법이나 형태를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복제인간에 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법철학자나 생명윤리학자들은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예견하면서 그 과정은 먼 미래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에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취하였다<sup>1)</sup>. 이러한 어려움과 여유로운 태도로 인하여 인간복제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이 매우 차이되고 있고, 이미 법적 대응을 한 국가라도 이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성문법으로 인간복제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도 인간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른 규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여 인간복제를 시도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상 흥결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일본은 2000년 12월 6일에 제정한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서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후 3년내에 인간의 수정란을 인간의 생명으로 취급하는 기본적 자세에 관한 과학기술회의 등의 검토를 거쳐 법률의 시행상황,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감안한 필요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미 입법적 흥결을 예상하여 인간복제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법적 규제의 상응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제 인간복제는 실험단계

1) 김일수, 인간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법조 1999.7. 16.

를 지나서 실재상황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당초 인간복제는 신의 영역에 인간이 도전하는 불행한 일이고 이에 대한 제어는 인간의 철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로 곧 인간복제에 관한 법을 제정할 예정이고, 이 경우 인간복제는 단순한 철학적·윤리적·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인 규제대상이 될 것이다<sup>2)</sup>. 본 고에서 는 이러한 인간복제에 대하여 그 허용성 여부와 각국의 입법례, 그리고 인간복제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민사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자 한다.

## 2. 인간복제의 개념과 종류

인간복제라는 것은 피복제자인 인간의 세포를 무성생식시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는 복제아인 인간을 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관점에서의 인간복제의 방법이나 종류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검증되지도 않았지만,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복제에는 크게 수정란복제와 체세포복제의 2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수정란복제는 수정란의 분열과정에서 배아세포를 분리하여 난모세포와 결합시키는 수정란 배아분할법과 수정란의 핵을 다른 난자에 이식하는 수정란 핵치환법이 있다. 체세포복제는 생식세포 대신에 이미 분화된 체세포(피부세포 등)의 핵을 이미 핵을 제거한 미수정 난자 또는 이미 수정된 난자에 이식하여 핵치환시킴으로써 만들어진 융합세포를 전기자극 등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 수정란과 같이 분열하도록 만들어진 복제란을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체세포 복제로 인간을 복제할 경우에는 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피부나 귓불 등에서 피복제인간에 대한 유전정보가 들어 있는 세포핵을 뽑아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핵을 빼내버린 여성 난자를 준비한다. 속이 빈 그 난자에 복제하려는 인간의 세포핵을 집어넣어 치환한 뒤 시험관에서 4-5일 키워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킨 후 이를 성장시켜 일반태아처럼 출산하게 한다. 그렇게 복제 인간이 태어나면 그 유전정보는 세포핵을 제공했던 인간과 같지만 복제 동물의 예로 볼 때 외모는 비슷하겠지만, 유전형질, 기억이나 지식까지 복제되지는 않는다. 수정란 복제는 이미 공개되어 동물에 대하여 많은 실험이 이루

---

2) 김일수, 전계논문, 25.

어져 있는 실정이지만 체세포 복제는 1997년 영국의 복제양 Dolly나 1999년 우리나라의 복제송아지 영통이처럼 최근에 개발되어 실험중인 기법으로 인간복제에 응용하기에는 문제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체세포복제방식에 의한 인간복제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에서의 복제성공비율은 2%-12%이고, 이렇게 태어난 동물 중 10%가 기형이라고 한다. 최근 러시아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복제에서 기형아의 탄생율이 99%에 이른다고 한다<sup>3)</sup>. 인간복제에서 기형아의 출산율이 99%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사실상 포기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호기심은 끊임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복제인간에 대한 법적문제를 법학에서 다루지 않으면 안되고 이는 법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3. 인간복제의 허용성

#### 3.1. 부정론

1)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손시킬 가능성이 있다. 서구의 기독교 전통에서는 인간의 불대체적인 정체성의 증거로서 피조물인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근대자연법사상에서는 존엄성은 자유존재로서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보편적인 인간평등의 원칙은 존엄성에서 비롯된다고 한다<sup>4)</sup>.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침해해서도 안되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손하는 인간복제가 성행할 경우에는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풍조가 만연되어 살인 등 각종 흉악범죄가 들끓게 될 가능성이 많다.

2) 인간복제는 인간의 고유성, 유일성 또는 독자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존재가 다른 인간과 다른 그 자신만의 유일한 존재이고 다른 누구도 자기 본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고유성을 가진다<sup>5)</sup>. 모든 인간은 자신

3) 2002.12.27.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4) 강희원, 배아복제와 인간존엄성의 정치학, 법제연구 제20호, 2001.6, 24.

5) 김민중,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민사법적 과제, 민사법학 제21호, 2002, 71.

에게만 고유하고 반복될 수 없는 독자성 또는 자신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고유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 인간복제로 인하여 인간의 비반복적 독자성 또는 유일성(uniqueness), 개성에 대한 권리(right to individuality)가 침해된다고 한다<sup>6)</sup>.

3) 인간복제는 인간을 도구화, 수단화 또는 상품화하여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다른 동물과는 달리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이다. 인간복제로 많은 복제인간-사실상 인조인간(de facto cyborg)-을 만들어서 범죄나 전쟁, 노동현장에 도구화할 가능성이 있다. 인체의 장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수단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복제인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의 상품으로서 노예와 같이 매매할 가능성이 있다.

4) 결혼제도와 가족제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자기복제인 자식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결혼과 가족생산은 인간생활의 기본구조를 이룬다. 그런데 부모 중 한 명의 체세포를 복제해 만드는 복제인간의 경우에는 부모의 유전자를 절반씩 물려받아 태어나는 '자녀'가 아니라 체세포를 떼어준 인간의 '쌍둥이'나 '동생'뻘이 된다. 특히 동생애의 경우라도 체세포복제를 통하여 '자녀'를 생산하게 된다면 이는 남자와 여자라는 인간의 기본질서를 무너지게 한다.

5)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유산, 선천성 기형, 면역체계의 결함, 조로 등이 예상된다. 태어난지 3년이 지난 영국의 체세포 복제양 Dolly는 복제에 이용된 어미양의 나이를 더한 9년에 가까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조로와 함께 세포가 이상증식하는 경우에는 암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sup>7)</sup>. 또한 Dolly의 경우 핵이식에 성공한 난자는 277개 였지만, 그 중 1개만 출산에 성공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되었다<sup>8)</sup>.

6) 인간의 욕망과 호기심은 끊임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치료목적의 인간복제라도 허용하면 인간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예외적인 제도가 원칙적인 제도가 되는 것

6) 노혁준, *인간복제의 법리*, 법조 2000.4, 127.

7) 김천수,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의 한계*, *의료법학*, 창간호, 2000.5, 359.

8) 박재우, *미국의 인간복제금지법안*, 법제 2002.2, 85.

은 쉬운 일이고, 결국 인간복제의 악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 3.2. 긍정론

1) 체세포 복제연구를 통하여 인류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특히 유전병, 암 등에 대하여 치료기법과 치료약을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복제인간 기술은 타인의 장기이식에 따른 피할 수 없는 면역거부반응을 회피할 수 있는 재생의료의 적용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2)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난자 또는 정자가 있어야 한다. 각종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이 편리해지고 유복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리어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각종 사고와 질병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인공수정조차도 할 수 없는 불임부부에게는 체세포복제를 통한 자식생산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하여 그들 부부에게 자식을 가지게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다.

3)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냉동 잉여배아나 성체(成體)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체세포 방식은 법안에 담겨 있진 않지만 허용으로 해석하면 된다. 체세포 핵이식 방식은 거부반응이 없는 치료용 세포나 인공장기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수준인 이 분야 기술을 퇴보시킬 것이다. 법안은 유전질환 진단 목적으로만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허용하고 검사 전에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계(家系)의 질병 등 유전정보를 이용해 교육, 고용, 승진, 보험에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에 대해서만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 3.3. 소결론

생각건대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모든 동물보다도 우월한 존재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절명의 가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인간복제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독특한 민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간 상당한 기간 격리되어 살아와서 이들 민족간에는 매우 다른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체의 체질상으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양인에게 특유한 질병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특유한 질병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특유한 유전적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에 관한 줄기세포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서 줄기세포의 연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질병예방과 아울러 뒤떨어진 생명공학의 발달에 일조를 하는 방법일 것이다.

#### 4. 인간복제의 규제에 대한 입법동향

아직까지 인간복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나라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약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복제에 대한 입법규제는 크게 각국의 입법상 규제와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가 있다. 먼저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로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으로는 제2차세계대전동안 의학과 과학의 허울을 쓰고 인간을 상대로 하는 실험을 무수히 자행하여 인권유린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기준이 된 1947년의 뉘른베르크 강령이 있는데, 이 강령은 사람에 대하여 하는 의료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직업윤리에 부합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험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다른 연구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이 있는 유익한 결과를 놓는 실험이어야 하고, 동물실험이나 질병의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되어야 하고, 불필요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7년 4월 유럽연합은 생물학과 의학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보호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Dignity of the Human Being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Biology and Medicine)을 의결하였다. 제11조에서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근거한 인간차별은 금지한다고 하고, 제18조에서 시험관내의 인간배아연구는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에 배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

치를 하여야 하고 연구목적의 인간배아생산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유전자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문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1월 부속의정서를 제정하였는데, 제1조에서 인간을 다른 인간(죽은 사람, 산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시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1997년 11월 유엔총회는 유네스코에 의해 주도된 인간유전자와 인권에 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을 의결하였다. 동 선언 제4조는 인간유전자를 이용한 상업활동을 금지하고, 제5조에서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의 사전동의에 의해 유전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인간 유전자에 대한 권리와 유전자 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유전자를 근거로 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제11조에서는 인간존엄에 위배되는 행위, 즉 인간복제와 같은 행위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선언에 대해서 유엔회원국들은 일반준수에 대한 외교상의 의무가 있다.

2000년 8월 스코틀랜드에서 세계의사협회는 1964년 6월 헬싱키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에 관한 헬싱키선언을 수정하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를 하는 의사들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서문에서 의사는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이 의무라고 한 후, 제10항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 과학문현에 대한 충분한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고 한다. 제12항과 제13항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연구의 계획은 윤리적 고려사항이 있어야 하고, 과학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의학적인 임상능력을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제14항에서 인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사는 그 연구대상 인간의 생명, 건강, 프라이버시, 존엄을 계속 수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별 입법에 의하면 잔여 배아 연구는 독일만 금지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상당수가 허용하고 있다. 체세포 핵이식은 프랑스, 독일이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법으로 허용한다. 미국은 하원에서 금지법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발이 둑여 있다.

#### 4.1. 영국

영국은 1978년 세계 최초의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양의 출생을 계기로 1982년 Committee on Bioethical Issues가 the Warnock

Report를 정부에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1990년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를 제정하였다. 이 법은 49개조문과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는 인간배아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고, 제3조에서 배아의 핵세포와 인간의 세포나 배아 또는 발육한 배아로부터 채취한 핵과의 치환을 금지하고 배아의 창조, 보존,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치료를 위한 인가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모는 대리모계약법(1985년)에 의하여 상업적인 대리모의 경우에만 금지한다.

#### 4.2. 독일

독일은 1990년 12월 Embryonenschutzgesetz(ESchG)를 제정하여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13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는 인간배아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고, 제1조에서 인공수정기술의 남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인간배아의 남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인간의 배아줄기세포의 유전형질을 인공적으로 변경시킨 경우에 처벌하고 있다. 제6조는 다른 배아, 태아, 인간 또는 사망한 자의 유전형질과 같은 유전형질을 가지는 인간배아를 만드는 경우에는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제7조는 키메라 등 잡종인간에 대한 교접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4.3. 프랑스

프랑스는 1994년 7월 인간신체존중에 관한 법(Loi No 94-653 du juillet 1994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9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조 제3항에서는 인간배아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금전을 지급하고 인간배아를 얻는 경우에는 7년의 징역형과 70만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제511-15조). 산업 또는 상업화의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시험관내에서 수태시킬 경우,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시험관내에서 수태시킬 경우에도 7년의 징역형과 70프랑의 벌금에 처한다(제511-17, 18조).

#### 4.4. 스위스

스위스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헌법상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1999년 4월 18일 제정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위스연방 신헌법은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인간에 있어서의 생명의료 및 유전자기술)의 제1항에서는 인간은 생명 의료 및 유전자공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연방은 인간의 생식세포형질 및 유전형질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그 경우 연방은 인간의 존엄, 인격 및 가족의 보호를 배려하고 특히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규정한 후, a.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 및 인간의 배우자 및 배아의 유전형질에 대한 개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b. 인간 이외의 생식세포형질 및 유전형질은 인간의 생식세포형질에 도입하거나 그것과 융합되어서는 아니된다. c. 의학적인 생식을 위한 여러 조치는 불임시 또는 위독한 질환의 전염위험성이 다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자식에게 특정한 성질을 가져올 목적으로 또는 연구할 목적으로 행하지는 못한다. 여성의 체외에서 인간의 난자를 수정시키는 것은 법률이 정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인간의 난자는 직접 여성에게 이식할 수 있는 숫자에 한하여 그 여성의 체외에서 배아를 생육시킬 수 있다. d. 배아의 제공 및 모든 종류의 대리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 인간의 생식세포형질 및 배아로부터의 산출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f. 어느 장의 유전형질은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하고, 기록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g. 누구도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9 a조(이식의료) 제1항에서는 연방은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의 분야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그 경우 연방은 인간의 존엄, 인격 및 건강의 보호에 배려한다고 규정한 후 제2항은 연방은 특히 장기의 정당한 배분을 위한 기준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인간의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제공은 무상이다. 인간 장기의 거래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0조(인간 이외의 유전자기술) 제1항은 인간과 그의 환경은 유전자공학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연방은 동물, 식물 기타 유기체의 생식세포형질 및 유전형질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다. 그 경우 연방은 생물의 존엄 및 인간, 동물 및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고 또한 동식물의 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근거하여 1998년 12월 18일 제정한 생식의료법(Bundesgesetz über die medizinisch unterstützte Fortpflanzung(Fortpflanzungsmedizingesetz,

FmedG))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44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인공수정에 대하여 제24조에서는 정자를 제공받는 처의 건강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의학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정자제공자는 선별되어야 하고(제19조 제1항), 자의 아버지가 되는 남편의 혈액형이나 용모와의 유사성에 대하여 배려되어야 한다(제24조 제4항). 정자제공자는 제공받는 처와의 사이에 민법상의 혼인장애가 없는 자라야 하고(제22조 제3항), 생물상의 아버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복수의 제공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정자제공을 받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정자제공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의학적 검사결과, 외견 및 제공일시를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공을 받은 부부에 대해서도 성명,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을 기록 작성하고, 자가 출생한 후 그 기록을 신분등록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5조). 신분등록관서는 이 기록을 8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생식의료법과 같이 미수정란 및 수정란, 배아의 타인에 대한 제공은 금지하고 있다(제4조). 고의로 제공된 난자를 이용한 자, 제공된 난자와 정자를 이용하여 배아를 만든 자, 제공된 배아를 여성에게 이식하는 것은 경범죄(Ubertretungen)로서 구류(Haft) 또는 10만프랑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조)고 한다.

생식세포 및 배아의 동결보존기술의 진보는 체외수정의 적용가능성을 비약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러한 생식세포의 보존에는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의사로서 주(Canton)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생식세포의 보존에는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고,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내이다(제15조 제1항). 다만 생식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받을 자 등이 장래에 스스로 자식을 가지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보존을 희망하는 때에는 5년을 넘겨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보존에 대하여 동의가 서면으로 철회되었을 때 또는 정하여진 보존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생식세포는 막바로 폐기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 다만 미수정란의 보존이 만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수정란세포의 보존은 금지하고 있다(제16조). 체내 이식이나 착상에 적절한 시기를 초과하여 배아를 체외에서 보존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제17조). 대리모 계약은 금지하고(제4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제31조).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물을 인위적으로 창조하는 복제기술은 명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만든 자 및 이를 여성 또는 동물에게 이식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제36조). 키메라(집합배아), 하이브리드(교잡배아) 등을 만든 자 또는 이를 여성이나 동물에게

이식한 자도 마찬가지이다.

#### 4.5. 미국

미국에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연방법은 아직 없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1997년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5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캘리포니아 등 5개주는 인간복제를 불법화했다. 최근 인간 복제는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실험까지 완전 금지하는 내용의 인간복제 금지법안으로 2001년 4월 26일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공화·캔자스) 상원의원과 커트 웨ลดن(Curt Weldon,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이 인간복제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를 담은 ‘인간복제 금지법안 2001’을 미국 상하 양원에 상정하였고 하원은 2001년 7월 31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2002년 말 현재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인간 복제 시도는 물론이고 장기 복제 등 의학적 치료 목적을 위한 연구도 불법화된다. 또한 복제작업에 참여하거나 복제 인간을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100만달러(약 1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 시행후 4년 또는 5년이내에 연구조사결과와 입법적, 행정적 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출하여 의회와 대통령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윤리상황의 변화에 따라 의학계나 생명공학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베이복제의 허용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2001년 8월 9일 부시대통령은 담화를 통하여 생명의 존중과 줄기세포의 연구촉진이라는 상반된 이념간의 조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범위내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연구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sup>9)</sup>.

#### 4.6. 일본

일본에서는 2000년 11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

9) 박재옥, 전계논문, 91.

2001년 6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20개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에서는 배아에 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누구라도 인간복제배아, 인간동물교잡배아, 인간성융합배아 또는 인간성집합배아를 인간 또는 동물의 자궁내에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 4.7.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는 생명공학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이 있지 만, 이는 생물학적 유전물질의 연구나 이를 이용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 뿐이고 아직 인간복제를 금지하거나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종래 이런 입법제정을 둘러싸고 두갈래의 흐름이 있는 바, 하나는 1983년에 제정된 기존의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으로 인간복제를 금지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복제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하는 흐름이다.

전자는 1997년 7월 2일 새천년민주당 장영달의원 외 46인의 발의로 제안된 안과 1998년 11월 19일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 외 35인의 발의로 제안된 안이 있다. 2개 안은 모두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후자는 2000년 10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청원한 생명공학인권·윤리법(안)이 있고, 2000년 12월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안), 2001년 7월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생명윤리 기본법(안)과 200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여야 의원 88명이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약칭 생명윤리법안)을 2002년 11월 14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정부가 생명윤리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복지부 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세포 핵 이식으로 배아(胚芽)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및 출산시키는 인간 개체 복제를 금지하며,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 잠여배아의 경우 불임 및 질병 치료를 위해 배아 줄기 세포 연구를 허용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인간복제가 또 다시 논란이 일자 한나라당 이상희·정의화 의원은 2002년

1월 2일 인간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안을 의원 26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인간개체 복제를 금지하고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할 경우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냉동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와 인간 신체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되,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간복제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1월 3일 이원형의원 등 20명 명의로 인간복제금지 및 줄기세포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입법이유로 종전의 입법안 및 대책은 윤리적인 측면에 과도하게 편향되어 생명과학발전이 심히 저해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연구소들은 문을 닫아야 하거나 외국으로 이전을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또 원칙적으로 임신 목적일 경우에만 배아생산이 허용되어 질병연구, 질병치료 등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입법한다고 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인간복제의 원칙적 금지는 세계 어디에도 유래가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기반 위에 생명산업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다.

#### 4.8. 소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생활에 따라 문화적, 종교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국가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규정하여야 하지만, 신분관계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적인 관념을 반영한 입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 5. 복제인간의 민사법적 지위

복제인간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상 지위와 형법상 지위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다. 복제인간의 민사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출생전과 출생후로 나누어서 논의할

수 있다<sup>10)</sup>. 민법상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고 하기 때문에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이전의 사람을 태아라고 하고, 민법은 일정한 경우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보호하고 있다(민법 제762조,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제1064조). 민법에서는 완전노출설이 통설이다. 형법에서는 영아살해죄로서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251조)고 규정하고 있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한 때에는 낙태죄(형법 제269조)로 처벌받는다. 형법에서는 전통설이 통설이다. 민법과 형법에서는 태아와 사람의 구분이 문제되고 따라서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생명공학에서는 수정란으로부터 언제 태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민법이나 형법에서는 태아를 인간의 전단계로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지만, 수정란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이나 형법에서도 언제부터 태아가 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낙태죄의 객체인 태아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태아 이전단계를 수정란 단계로 본다면 수정란 단계와 태아의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분명한 것은 난자와 정자는 인간생명체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판례는 인간의 생명은 임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고 함이 헌법 아래에서 국민일반이 지니는 전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sup>11)</sup>라고 하고 있다.

### 5.1. 수정후 출생까지의 단계

인간의 발생을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면 정자와 난자의 각 23개의 염색체가 서로 쌍을 이루는 23쌍의 염색체를 지닌 단세포 수정란(zygote)이 된다. 수정 후 하루가 경과하면 수정란은 2개의 세포로 나누어진 후 세포질의 증가없이 등분되는 세포분열을 계속하여 8세포기 단계인 상실배(morula)와 배반포(blastocyst)까지 전배아(pre-embryo) 즉 전능세포(totipotent cells)로서 분열한다. 수정 후 14일이 지나면 배반포의 한쪽 끝에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형성되고, 이 때부터 분열된 세포들이 후배아(post-embryo) 즉 다능세포

10) 김천수, 복제인간의 법적지위, 비교사법 제8권 제2호, 2001, 678 이하.

11) 대판 1985.6.11, 84도1958.

(pluripotent cells)로 신체기관이 성장하여 수정 14일 후부터 8주까지 장기가 완성되고, 8주이후에는 태아(fetus)로서 장기들이 양적으로 성장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난자/정자(수정)-수정란-전배아(14일이전의 전능세포)-후배아(14일 이후의 후능세포)-태아-출생-사람의 단계를 거쳐 사람이 출생한다.

### 1) 난자와 정자

인간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권리의 객체는 될 수 없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예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도 인격권은 인정되지만 소유권은 성립하지 않는다<sup>12)</sup>. 신체의 일부라도 살아있는 몸으로부터 분리된 모발, 치아, 혈액 등은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분리당한 인간의 소유에 속한다.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끝수, 각막 등 신체의 일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매매가 금지되지만, 난자와 정자에 대하여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최근 병원에서 정자은행, 난자은행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고, 이 경우 거래행위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사실상 매매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난자와 정자는 권리주체로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러면 인간의 난자와 정자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난자와 정자는 신체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는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중 동산에 해당하고 분리당한 인간의 소유로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나 매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인간의 난자와 정자는 장차 인간의 생명체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나 매매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 2) 수정란

인간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되면 하나의 수정란이 되고 이것은 점차 세포분열을 하면서 배아로 성장한다. 수정 후 14일이전의 배아는 각 세포들사이에 상호작용도 없고 척추, 내장 등 신체기관도 발생하지 않은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수정 후 14일이 지나면 자궁에 착상을 한다.

독일의 배아보호법(Embryonenschutzgesetz-ESchG)상 배아라는 것은 이미 수

1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242.

정되어 24시간이 경과하여 발생이 시작될 수 있게 된 핵분열이 개시되는 인간의 난자 세포를 말한다고 하며, 나아가 장차 어떤 신체의 일부로 진행될 수 있고 한 개인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배아로부터 채취한 전능세포를 포함한다(제8조)고 한다. 즉 독일배 아보호법에서는 수정 후 24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배아로 보호받는다.

이 수정란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착상전의 수정란이라도 인간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견해<sup>13)</sup>와 착상전의 수정란은 아직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지만 인간생명의 상징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거나<sup>14)</sup>, 생명의 시기는 착상시로 보아야 하므로 권리주체의 실체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정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sup>15)</sup>가 있다. 형법상 낙태죄의 객체인 태아의 개념에 대해서는 수정시설과 착상시설이 있고, 착상시설이 다수설이다. 형법상 낙태죄의 객체인 태아는 수정 후 자궁에 착상한 때로부터 인간이 되기까지의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sup>16)</sup>. 생명은 양이 아니고 질로서 판단될 존재라고 하면서 자궁벽에의 착상 완료 가능성이나 조직분화의 개시여부를 인간생명성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sup>17)</sup>에서는 수정의 단계를 넘어서는 어느 한 단계를 선택하여 그 이전의 것은 생명이 아니고 그 이후의 것은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임의적 내지 자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탄생할 개체가 인간이라면 수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핵치환의 시점에서 인간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stem-cell)에 대한 합법적 연구를 위해서라도 수정란에 대하여 법적으로 권리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의료과학 기술수준상으로는 줄기세포가 채취된 인간수정란은 폐기되어 인간수정란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정란에 대하여 인간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는 낙태죄나 상해죄 등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착상 전의 수정란은 인간으로서 볼 수 없고 인간생명체로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착상 전의 수정란을 권리주체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간수정란에 대한 법적 보호는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자궁에 착상 후의 수정란은 태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태아에 관한 해제조건설의 입장에서는 법정대리인을 통하

13) 문국진, 인공수정의 법의학적문제, 법률신문 1160호, 1986.11.17, 13.

14) 고상룡, 태아의 권리능력, 월간고시, 1986.6, 101.

15) 고정명, 인공적임신의 법리적고찰, 교문사, 1989, 90.

16)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3, 49;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91.

17) 김천수, 복제인간의 법적 지위, 681.

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 3) 배아

생물학적으로는 수정이 된 후 수정란은 수정 후 14일까지는 전배아로, 14일부터 8주까지는 후배아로, 8주부터 출생까지는 태아로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이나 형법에서의 학설상으로는 태아는 착상시부터 출생까지의 존재를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후배아와 태아에 해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태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민법의 학설상 수정시부터 태아로 본다는 견해나 형법상 낙태죄의 객체를 수정시부터 태아로 본다는 견해에서는 법적으로 태아의 개념이 수정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결국 수정란과 배아의 구별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게 되고 동일하게 보면 된다고 할 수 있다.

### 4) 태아

태아는 후배아로부터 출생시까지의 단계를 말한다. 즉 수정 후 14일이 지나 자궁에 착상이 된 때로부터 출생까지를 말한다. 인간복제로 이루어진 태아라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5) 복제인간

체세포복제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이미 다른 정자와 수정된 난자의 핵 또는 미수정난자의 핵에 체세포의 핵을 이식·치환시켜 이루어진 융합세포를 수정란으로 하여 세포분열하도록 한 후 이를 자궁에 착상시키는 수법을 가정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정자와 수정된 난자의 핵에 체세포핵을 이식·치환시키는 경우에는 복제아의 친생부모는 누구인가. 예를 들면 부부관계인 갑남의 정자와 을녀의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한 후 수정란의 핵을 명남의 체세포로 치환·이식시킨 후 정녀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아를 출산케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더라도 갑·을·명·정의 인간을 각각 다른 인간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수정된 난자에 체세포핵을 치환하여 난자의 소유자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케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정된 난자와 정자의 소유자를 친부모로 볼 수도 있지만, 체세포핵의 소유자를 친부·모로 보아야 하고 출산한 임산모를 친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체세포핵의 소유자와 자궁을 빌려준

임산모가 유전적으로 가장 친부모에 가까운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수정 난자의 혼에 채세포핵을 이식·치환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위와 같은 예를 들면 잡녀의 난자에 음의 채세포핵을 이식·치환시켜 수정란을 만든 후 이를 병녀의 자궁에 착상시켜 복제아를 출산케하는 경우를 전제하면 여러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미수정 난자의 혼에 채세포핵을 이식·치환시켜 복제아를 출산케하는 경우의 친부모는 난자의 소유자를 친모로 볼 수도 있지만, 채세포핵제공자를 친부·모로 보아야 하고 출산한 임산모를 친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제인간에 대해서는 크게 부자관계, 모자관계, 형제자매관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1) 부자관계

채세포핵제공자가 복제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현재의 기술로서 복제아를 만든다고 한다면 수태시에 일란성쌍생아의 한쪽을 동결보존하여 나머지 배아가 성장하여 아이로서 출생, 생육한 단계에서 자궁에 착상시켜 연령차가 있는 쌍생아를 출생시킴으로써 혼제공자와 복제아를 동일한 유전관계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유전적으로는 혼제공자와 복제아는 일란성쌍생아와 유사한 관계가 되어 생물학적으로는 형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혼제공자가 임신한 여자의 남편이라면 혼제공자와 복제아는 부자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채세포핵제공자가 자궁제공자의 남편이 아닌 경우에는 부친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는 불가능하지만,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 (2) 모자관계

모자관계는 혼인을 한 여성이든지 혼인을 하지 아니한 여성이든지를 불문하고 분만 즉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한다. 대리모에 의한 출산의 경우에도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한다.

출산한 여성쪽에서 본다면 난자에 제공된 혼은 출산여성의 것이 아니고 대리모에서의 자궁제공자와 유사한 입장에 있고, 유전적인 어머니는 아니다. 따라서 혼제공자 및 자궁제공자는 유전적인 부모라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유전적인 부모는 오히려 일란성쌍생아의 예를 비추어 보면 혼제공자의 부모라고 할 것이다. 친족법적으로는 출산한 자궁제공자가 어머니가 된다.

(3) 형제자매관계

핵제공자와 복제아의 관계를 일란성쌍생아와 유사한 관계로 보더라도 일란성쌍생아의 요건은 동시에 출생한 양자가 형제자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일란성쌍생아의 한쪽 배아를 냉동보존하고 다른 쪽의 배아가 성장, 출생, 생육한 시기에 그 배아를 다시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시킨 예가 없는 이상, 복제아의 출산은 종래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생물학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된다. 생물학적으로도 본래 존재하지 아니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친족법적으로 의제해야 할 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핵제공자와 친족법의 형제관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유전상의 부모의 사망에 의한 상속은 핵제공자가 받았는 재산에 관하여 소급하여 지분의 주장을 할 수 있다.